

예산총칙

제1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6,879,667,656	206,390,030
일반회계		5,444,848,848	163,345,465
특별회계		1,434,818,808	43,044,564
	공기업특별회계	328,263,021	9,847,891
	① 상수도사업	152,116,035	4,563,481
	② 하수도사업	176,146,986	5,284,410
	기타특별회계	1,106,555,787	33,196,674
	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84,794,101	11,543,823
	② 수질개선특별회계	4,994,257	149,828
	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6,704,823	201,145
	④ 하남 3 지구 도시 개발 특별 회 계	50,511,747	1,515,352
	⑤ 택지 개발 사업 특별 회 계	1,173,397	35,202
	⑥ 교통 사업 특별 회 계	39,782,140	1,193,464
	⑦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 계	8,976,630	269,299
	⑧ 학교 용 지 부 담 금 특별 회 계	31,897,382	956,921
	⑨ 산업 단지 조 성 사 업 특별 회 계	9,759,612	292,788
	⑩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	57,616,616	1,728,498
	⑪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	323,752,642	9,712,579
	⑫ 소방 특별 회 계	186,592,440	5,597,773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489,678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
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